

# 식품의 위생 및 안전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I | 배경

식품의 위생과 안전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지켜져야 한다. 최근 외식업 발달, 음식업의 창업 증가,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이 확대되면서 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식품은 그 종류가 자연식품에서부터 가공식품까지 다양하고, 그 취급자도 제조업자, 수입업자, 요리사, 판매자등으로 다양하여 식품의 위생과 안전과 관련된 법률도 복잡하다. 대표적인 식품의 위생과 안전 관련 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및 긴급대응과 추적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식품과 식품첨가물로 구분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이력의 추적이 어려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기능식품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 위생과 안전은 식품의 제조 과정 등에서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선진화된 식품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관한 법률에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식품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와 같은 식품 관련 법률로서 2017년 이후 발의되었던 식품의 안전과 위생과 관련된 법률 중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 식품 위생 및 안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 가. 임산부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임산부, 영·유아, 수유모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적합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2017. 3. 7.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 나. 조리사에 대한 식품위생안전교육 강화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2017. 3. 24.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 가. 안전 상비의약품판매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면제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함(2016. 12. 30. 윤상직의원 대표발의)

#### 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규격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어린이용에 적합하도록 그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함(2017. 2. 22.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3. 17. 박맹우의원 대표발의)

####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통기한 등의 점자표기 의무화

현재 권고사항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섭취 시 주의사항 및 유통기한 등에 대한 점자표기를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2017. 4. 3. 윤소하의원 대표발의).

## III | 식품의 안전 및 위생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1. 식품위생법 개정

#### 가. 집단급식소 위해식품 공급자 가중처벌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다수이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의 경우 치명적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2017. 4. 11.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 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 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2017. 2. 17.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다. 재범에 대한 필요적 징역형의 합리적 조정

전범(前犯)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재범에 대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재범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2017. 3. 22. 윤종필의원 대표발의).

#### 라.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집단급식소 식품위생 사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한정하고 있는 과징금부과대상에 유통기한 변조행위, 비식용원재료 사용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2017. 3. 3.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2017. 3. 3.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가. 수입식품 등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등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범위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검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

### 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대여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다. 시험·검사기관의 임원 관리 강화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하여도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라. 시험·검사감시원 위촉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시험·검사능력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IV | 입법전망

식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기준은 원산지 표시 등 정보제공에서부터 직접 제조·생산·수입·판매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까지 식품 또는 식품의 취급자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집행상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은 대다수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고 특히 임산부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규제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된 대상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법안 등 이해관계집단간의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견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